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H전자부품공업(주) 소속 근로자가 퇴근후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마친후 혼수상태가 되어 사망한 경우

(88-97호 88. 6. 20.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4동

성명 : 서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원 처 분 청 :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2. 1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사망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H전자부품공업(주) 생산직 근로자로서 1987. 5. 21.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1987. 11. 21. 18:30경 식당에서 피재자외 17명이 20:40경까지 회식을 마친후 피재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약 30분정도 "양○○"과 "남○○"가 같이 있다가 밖으로 나와 약 10분후 다시 들

어가보니 계단에 누워 있어 동료 근로자가 부축하여 인근 여인숙에 옮겨 잠든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가 익일 여인숙에 찾아 갔을 때도 피재자가 계속 코를 끌면서 자고 있어 깨워보았으나 일어나지 않으므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가묘하였으나 1987. 12. 5. 12:12경 "외상성 뇌출혈(좌경뇌막하출혈)"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보험법 제3조에 규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보험법 제9조의6 및 제9조의8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회식 장소와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 영역하에 있지 않았으며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담이 참석자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해라고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던바 산업재해보상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부장의 지시로 "양○○" 반장이 전화로 피재자를 불러내어 생산성의 능률배양과 작업위로에 대한 회식으로 같은과 사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일환의 회식 장소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이는 업무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

이 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8. 4. 7. 서○○)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4. 8.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1988. 3. 22. 오○○)
4. 유족보상 청구서(1988. 1. 15. 서○○)
5. 사망진단서(1987. 12. 6. 대림성모병원)
6. 재해조사 복명서(1988.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7. 업무협조에 대한 회시(1988. 2. 8. 서울 남부경찰서장)
8. 문답서(1988. 1. 20. 양○○)
9. 진료사실 확인서(1988. 대림성모병원)
10. 출퇴근 카드(1987. 11. 이○○)
11.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의 재해발생경위가 1987. 10. 27. “양○○”이 생산2과 반장으로 부임이후 모임이 없었으며 1987. 11. 19. ~21. 사이에 임업을 하였는바 재해당일이 마침 토요일이고 동료들이 회식을 원하기 때문에 경비는 각자 지출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1987. 11. 21. 18:30경 구로공단 가리봉 전철역 앞 ○○식당에서 생산2과 반원 16명(남8, 여8)이 저녁식사겸 회식을 하고 20:40경 끝났으나 피재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약 30분가량 “양○○”과 “남○○”가 부축하여 약 150미터 정도에 소재한 ○○여인숙에 옮겨 피재자가 잠이든 것을 보고 둘 어갔다가 그 다음날인 1987. 11. 22. 09:30경 “양○○”이 여인숙에 찾아 갔을때도 피재자가 계속 코를 골며 자고 있어 깨워보았으나 일어나

지를 않아 즉시 회사에 보고한 후 대림성모병원에 응급차를 불러서 입원하게 하였는바 피재자가 1987. 11. 22.부터 1987. 12. 5까지 전시병원에서 입원 가료하였으나 1987. 12. 5. 12:13분경 사망하였으며,

둘째 : 피재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7. 12. 6.자 발행 대림성모병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및 뇌압상증증, 중간선행사인 : 1) 뇌좌상(고도), 2) 급성 뇌경막상혈종 축두부정부 우, 3) 급성뇌경막하혈종, 4) 연뇌막하출혈, 5)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세째 : 피재자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서울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987. 11. 21. 23: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 2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생산2과 반장인 “양○○”의 승진기념회식에 동료 16명과 같이 참석하여 소주를 먹고 취하여 동식당 2층 출입구에 설치된 난간 모서리에 변사자의 왼쪽머리가 부딪히며 넘어져 의식을 잃은채 동년 11. 22. 대림성모병원에 후송 수술치료중 동년 12. 5. 12:13분경 사망하였으며 1987. 12. 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외상성 뇌출혈(좌경 뇌막하출혈)”로 사망하였으며 타살혐의 발견치 못함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재해발생 경위와 사망원인간에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1987. 11. 21. 재해당일은 4시간의 임업을 하고 18:01분경에 퇴근하여 곧바로 회식장소로 가서 회식을 마친후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이나 개인적 모임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업무상 사유가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K통운(주) 근로자가 운행중 몸에 이상을 느껴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 심폐기능마비, 중간 선행사인 ; 질식, 선행사인 ; 후두부 부종 및 출혈”로 사망한 경우

(88-162호 88. 7. 18. 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부산직할시 동구 수정동

성명 : 천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원 처 분 청 : 부산지방노동청장

주 문

부산지방노동청장이 1988. 3. 31. 자 “천○○”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부산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3. 31.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근로자 권○○(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3. 4. 29. K통운(주)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8. 1. 22 Y철장(주) 제품인 철판을싣고 동일 새벽 부천시 소재 S정밀공업사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동차량의 가바나 호스의 고장으로 동일 07:30경 경산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타 차량을 이용 부산 본사에 가서 부품을 수령하여 같은날 19:30 경산휴게소에 도착 차량수리후 목적지를 향해 주행중 1988. 1. 22. 21:30경 몸에 이상을 느껴 차를 추풍령휴게소에 정차시켜 놓고 1988. 1. 23. 00:35경 김천시 소재 남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여관에서 휴식중이었으나 계속 통증이

있으므로 다시 남산병원에 가서 치료중 1988. 1. 23. 04:15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인이 “직접사인 :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 질식, 선행사인 : 후두부 부종 및 출혈”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과로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던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업무수행중 과로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또 사체부검 감정서에 의거 상병명 “급성후두염 및 후두개농양”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동 질병을 유발시킨 것으로서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5. 천○○)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6. 2. 부산지방노동청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1988. 4. 25. 오○○)
4.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1988. 3. 31. 부산지방노동청장)
5. 사망진단서(1988. 1. 28. 남산병원장)
6. 재해사고 실지조사 복명서(1988. 3. 24. 행정주사 김○○)
7. 감정서 및 동 보충설명서(1988. 4. 경북의대 법의학교실 곽○○)

-
8. 건강진단 개인표(1985. 10. 15. 회사 보건관리자)
 9. 문답서(1988. 3. 23. 총무과 사원○○)
 10. 탄원서(1988. 5. 27. 사원 박○○ 외 71명)
 11. 출장복명서(1988. 7. 1. 심사위원장 외 2명)
 12.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해석대, 피재자는 K통운(주)운전기사로 근무중인 1988. 1. 22. Y철강(주) 제품인 철판을싣고 같은날 새벽 부천시 소재 S정밀회사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주행 중 동 차량의 가바나 호스의 고장으로 같은날 07:30경 경산휴게소에 동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타 차량으로 부산 본사에서 부품을 수령하여 같은날 19:30경 경산휴게소에 도착 차량을 수리한 후 목적지로 주행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추풍령휴게소에 정차시킨 뒤 동일 00:35경 인근 김천시 소재 남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근 여관에서 휴식중 계속 통증이 있어 다시 남산병원에 가서 가료중 1988. 1. 23. 04:15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유족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와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는 회사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Y철강(주)의 철판을싣고 부천으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주행 중 발병 사망한 자로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 피재자의 남산병원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 질식, 선행사인 : 후두부 부종 및 출혈”임

이고 경북의대 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후두염 및 후두 개농양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인 감정서에 대한 보충 설명서에 의하면 …… 중략 …… 그러므로 사망자 권○○의 급성 후두염 발병요인으로서 그의 업무수행이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심야에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질환의 경과에도 업무수행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의 사망은 과로로 보아야 한다.

세째 : 피재자의 1988. 1. 22. 부터 사망시까지의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1988. 1. 22. 05:30 출발 1988. 1. 23. 21:30 발병시까지 무려 18시간 이상 계속 근무 과로하였고 평상시에도 2박3일 간격으로 월10회 내외로 불규칙적 반복적으로 운행(주로 서울방면)하므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 권○○은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되고 경북의대의 감정소견상 발병 당시의 상황에서 상병명 급성 후두염의 발병으로서 그 업무 수행상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발병원인이 그의 업무수행(특히 심야근무)으로 인하여 본질환의 경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와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